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19. .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로컬푸드 소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업소에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인식교육에 중점을 두어 로컬푸드의 저변을 확대하고 생산농가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26조(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삭제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

제26조 앞에 “제8장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을 삽입한다.

제27조 앞에 “제8장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6조(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판매업소에 로컬 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장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 제27조·제28조 (생 략) 제29조 (생 략)	<삭 제> 제8장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 <삭 제> 제26조·제27조 (현행 제27조 및 제28 조와 같음) 제28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 실현 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계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5. “참여 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가공

- 유통 · 소비자 전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 순환 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 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절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농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 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5. 로컬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제2장 로컬푸드 육성 · 지원계획 수립 · 추진

제4조(로컬푸드 육성 · 지원계획 수립)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 지원계획(이하 “육성 ·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 · 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체험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육성·지원계획이 여성 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
 8.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실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육성·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제6조(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로컬푸드업무 담당 과장

2. 구미시의회의원

3.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가공·유통분야 단체 대표

5.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등 대표

6. 구미교육지원청 로컬푸드업무 담당 과장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컨설팅기관 등 전문가

8. 그 밖에 로컬푸드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로컬 푸드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로컬푸드 생산·가공 활성화

제17조(로컬푸드 생산) ① 로컬푸드 생산은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사업
4.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사업
5. 여성농업인 소생산자 공동체나 영농법인의 직거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업인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로컬푸드 통합센터

제19조(통합센터 설치)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로컬푸드 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라인·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체험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사업
5.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6.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홍보·교류협력사업
7. 학교급식·공공급식 사업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순회수집·저장·가공·선별·포장·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장류·김치·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
4. 가공식품단지: 제빵·제과·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5. 교육·홍보센터: 로컬푸드 관련 교육·상담·자문
6. 공공(급식)지원센터: 정책·기획·홍보·물류·유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0조(통합센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통합센터를 관리 및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통합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회적 기업·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합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구미 로컬푸드의 인증

제21조(로컬푸드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식품과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농업인, 음식점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인증의 기준, 신청·표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 등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제7장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

제23조(농업인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하여 적정수의 로컬푸드 농업인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소포장·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농산물 장터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농업·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농식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청소년·장애인 등)·저소득 계층(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

제26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

· 가공·유통·소비의 과정과 인증센터·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7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농식품 중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